

2021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부산도시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현 생활권내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산도시공사가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도시 저소득 주민이 현 생활권내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 본인이 전세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부산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역(부산광역시 해당 구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 1. 20.) 현재 1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매입·전세임대 : (1순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급여·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가 30%이상인 자, 주거급여·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1956년 1월 20일 이전 생),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동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신청자의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연속거주 기간, 부양가족수 등 매입임대 업무처리 지침 상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 순위 선정

※ 동점인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에 대한 점수 합이 높은 순으로 선정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하며, LH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신청자의 중복신청도 불가

※ 단, 매입임대에서 전세임대, 전세임대에서 매입임대는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구성원이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가구원수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수에 의함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세대구성원이란(자격검증대상)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경우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대상지역 및 대상호수

1. 매입임대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13개 구군(강서구, 중구, 동구 제외) (470세대)

구분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진구	해운대구
모집인원	50	10	50	40	40	40	50	10	50	30	20	30	50

•대상주택 :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전용 85㎡이하)

※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전세임대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전역 16개 구군 (150호)

구분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모집인원	4	7	8	10	14	6	8	17	14	17	9	4	6	7	12	7

구분	기존주택전세임대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1)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한도액	8,000만원(자기부담금 5%포함)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 매입임대 :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임대조건 중 택일 • 전세보증금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월임대료 없이 완전전세) • 기본임대조건 : 400만원 내외, 임대료 6~8만원 수준 ※ 공급면적 및 준공년도에 따라 기본임대조건이 상이함 ○ 전세임대 • 전세지원금 : 8,000만원의 전세주택에 대하여 7,600만원까지 지원(95% 지원, 본인 5%부담) (7,600만원 지원 시 본인 400만원 부담, 월임대료 126,600원) ○ 매입·전세임대 계약 전에 주택도시기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계약 가능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1. 신청일정

- ◇ 접수기간 : 2021. 1. 27.(수) ~ 2021. 2. 5.(금)
-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재 관할 주민센터
- ◇ 선정통보 : 2021년 4월 중순 예정

2. 신청시 구비사항 (상세 모집공고문 참고)

(공사홈페이지: <https://www.bmc.busan.kr/bmc/main.do>)

구비사항	비 고
매입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처 비치 및 모집공고문 첨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접수처 비치 및 모집공고문 첨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 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1부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 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1부	주민등록등본 상 해당 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주택청약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에 한함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발급) ※ 발급기준일: 2021. 1. 20. - 매입임대 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2021980005 - 전세임대 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2021980006
신분증 및 일반도장	본인 및 배우자 신청 시: 신청자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신청자 본인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1부	접수처 비치 및 모집공고문 첨부 ※ 장애인(소득70%이하)추가 서류
기타서류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 시)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 시) 주거지원 시금가구: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거주지 사진(전용부엌,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 1. 20.)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등재 관할 주민센터 및 구청

◇ 임대차계약 및 입주 관련 :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매입임대 ☎ 051-810-1314, 1309 / 전세임대 ☎ 051-810-1305, 1318)

2021. 01. 20.

부산도시공사 사장